##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41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이춘석·이연희·김윤덕

윤준병 • 윤종군 • 박해철

김영환 · 이원택 · 이학영

안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 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 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다목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벌칙)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제1호다목의 죄를 범
	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
	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
	<u>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